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7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이용우·유동수·홍성국

송영길 · 이병훈 · 홍정민

박홍근 • 윤준병 • 강준현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 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 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 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납품업자에게 조정 취하를 종 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6조, 제26조의2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2호 중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 (訴)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를 "조정의"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 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조정 등) ① ~ ④ (생	제26조(조정 등)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	⑤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	2. <u>조정의</u>
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	
<u>하였거나 조정의</u>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6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조
	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
	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
	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
	<u>할 수 있다.</u>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
	<u>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u>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

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 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 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 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 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 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